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채용 공고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계 약 기 간	근 무 부 서
선수단 운영지원	2명	· 프로선수단 행정 / 매니저 · 유스팀(U15/12) 운영지원	입사일로부터 1년	사무국 선수운영팀

※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정규직 전환심사를 완료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2.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음

3.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 서류전형

- 1) 당해 채용 분야와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 여부
- 2)

구분	심사배점 기준 점수			비고
	응시원서의 충실성	직무적합도	직무관련 경력(경험) 및 지원동기	
선수운영팀 기간제근로자	30	30	40	

- 3) 심사위원 점수합산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인원의 3배수를 합격인원으로 함(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
-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2차 : 면접시험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평가
- 2)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주제에 맞는 논리성 30점, 재단 발전을 위한 사명감 및 성실성 20점, 예의 및 품행 등 10점, 발전가능성 등 심사위원 종합평가 10점
- 3) 심사위원 점수합산 평균 6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임용 후보자 선정 (평균 60점이하 부적격자로 평가하여 점수 충족 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 4) 면접시험일 :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합격자 발표

- 1)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부정합격을 비롯한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순으로 임용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

○ 응시원서 1부

※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증 및 경력(경험)증명서 1통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발생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
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아동폭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추후 제출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5. 모집일정

○ 공고기간 : 2023. 11. 29(수) ~ 12. 11(월) 18:00 【1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30(목) ~ 12. 11(월) 18:00 【8일간】

○ 원서접수 : 방문(토·일·공휴일 불가),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 우 편 - 31136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1층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 접수 마감일18:00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등기)/이메일 공통)

○ 접수장소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천안축구센터 1층)

☎ 041-576-6667 / 이메일 : ccfc2002@naver.com

○ 1차 합격자 발표 : 2023. 12. 18(월) 예정 (개별통보)

○ 2차 면접 일정 및 장소 : 2023. 12. 20(수) 예정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2(금) 예정 (개별 통보)

※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사전 공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시 반환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선발예정 인원이 없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도 포함)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류심사 7일전까지 천안시 및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홈페이지, 통합공개 시스템에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041-576-66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 응시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공개채용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지원직무	선수운영팀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장애대상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관련 교육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십시오.

◇ 직무수행계획

※ 작성요령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출신학교)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축구단 채용예정 직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작성바랍니다.
- 작성요령(예시)
본인의 지원 분야에서 구단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역량, 노하우,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분량은 A4지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지원자 :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전화번호	서류적격심사,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주소	응시자 본인확인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	서류적격심사,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고유식별번호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제3자의 제공

제공 대상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천안시청 등 감사기관	감사	응시원서	감사기간
4대 보험공단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영구보존 및 입, 퇴사시 이용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층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정관 >

제2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상임이사(단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단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로 정한다.

<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직제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재단 사무국의 직급은 상임이사(단장), 사무국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단, 필요시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 외로 기간제 근로자채용을 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경영기획팀, 선수운영팀, 전력강화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이사(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